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전기자동차 등을 판매할 때에는 구동축전지의 제조사, 용량, 전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안 제8조의3 신설).
- 자동차의 말소등록 시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 자동차의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말소등록을 허용함(안 제13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최근 2년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으로 동일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안전성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7제4항제3호 신설).
- 일정한 차령이 경과한 사업용 대형 자동차 등은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고, 점검 결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비하도록 함(안 제36조의2).
-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고, 비밀의 누설금지를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촉 및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7조의8 등).

-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기 위한 표시·광고를 하려는 자는 자동차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소유자 사전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표시하도록 함(안 제57조의2 및 제69조의5 등).

II. 검토의견

-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수정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제시함(주서본 참조).

(조 제목의 중복 해소 필요)

- 개정안 제36조의2는 화물·특수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령을 경과한 경우에 정기점검을 받게 하고, 필요 시 자동차를 정비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정안 제36조의2의 조 제목은 “자동차의 점검”으로 규정하여 “화물자동차”를 명시하지 않았으며, 현행법 제37조는 일반적인 점검 및 정비 명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조 제목을 “점검 및 정비 명령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¹⁾ 개정안

1)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를,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각각 명하여야 한다.

1.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2. 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한 자동차
3.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2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제11호 및 제3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업용 자동차
5. 천재지변·화재 또는 침수로 인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

및 현행조문 모두 자동차의 “점검”을 반복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폐지('13.12월)된 정기점검 대상에 화물·특수자동차뿐만 아니라 승용차, 승합차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향후 추가 개정 소요가 없도록 “자동차”를 “화물자동차”로 수정함에 이견을 표시하고 있음. 그러나, 이번 개정내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에 국한하고 있고, 현행법 제37조의 “일반적 점검”과 구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안 제36조의2 조 제목을 “화물자동차 등의 점검”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함.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36조의2(자동차의 점검)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 및 차량총중량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 (이하 “사업용 화물·특수자	제36조의2(화물자동차 등의 점검) ① ----- ----- ----- ----- ----- -----

정되는 자동차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제2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 ④ 제3항 전단에 따른 운행정지 명령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이행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동차”라 한다)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령을 경과한 경우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용 화물·특수자동차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해당 사업용 화물·특수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사업용 화물·특수자동차를 정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항목·방법·절차·유효기간 및 유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